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73
----------	-----

2021. 7. 20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2일

-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장거래 소방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조)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1월20일 (2016. 1. 21. 시행) 개정되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근거법령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.
- 「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본 조례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조)
-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→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 <u>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 <u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